명예졸업에 관한 규정

(제정 2023.3.1.)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대학교(이하 "우리 대학교"라 한다)의 명예졸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대상 및 자격) 명예졸업은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적하였고, 재학 당시 품행이 방정했던 학생 중 특별한 사정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졸업증서(별지서식1)를 수여 할 수 있다.
 - 1. 사회적 · 국가적 발전에 공헌한 자
 - 2. 우리 대학교 발전에 공헌을 한 자
 - 3. 기타 명예졸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
- 제3조(명예졸업심사위원회) ①명예졸업 심사를 위하여 명예졸업심사위원회를 둔다. ②위원회 구성은 10명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은 교육지원처장, 기획조정실장, 학생처장 및 해당캠퍼스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교육지원처장으로 한다.
- 제4조(수여절차) 명예졸업증서는 해당 단과대학장 또는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수여 한다.
- **제5조(학적부 기록)** 명예졸업자는 학적부에 기재한다. 다만, 기존의 학적상태 및 학업성적부는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.
- 제6조(수여시기) 명예졸업증서 수여는 수시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명예 제○○○○-○○호

명예졸업증서

성 명:

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 생

위 사람은 ○○○○년 ○○월 본교 ○○대학 ○○학과에 입학한 후
필요한 소정의 과정은 이수하지 못하였으나 [
]을 하였기에 명예 졸업 증서를
수여합니다.

20 년 월 일

명지대학교 총장 ○○박사 ○ ○ ○ (직인)